##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00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박 정 • 한민수 • 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유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91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중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.

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행정기본법」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,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「행정기본법」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4조).

#### 법률 제 호

#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2항 중 "20일"을 "30일"로, "15일"을 "25일"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"15일"을 "14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20일"을 "30일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34조(이의신청) ① (생 략)	제34조(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			
	<u></u> 이 교			
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	②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				
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				
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	<u>30일</u>			
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<u>15일</u>	<u>25일</u>			
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				
장에게 하여야 한다.				
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	③			
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<u>15일</u>	14일			
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				
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				
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				
여야 한다.				
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	<b>4</b>			
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				
를 받은 날부터 <u>20일</u> 이내에	<u>30일</u>			
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				
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				
을 청구할 수 있다.				
<u>&lt;신 설&gt;</u>	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			
	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			

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 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 른다.